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허8969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변리사 이성훈  
피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진태  
환송 전 판결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7허1169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후112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16.  
판 결 선 고 2012. 3. 1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7. 9. 28. 2007당2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2) 원출원일/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1999. 10. 18./2004. 1. 6./2004. 5. 24./제 434303호

3)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피고의 특허발명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 7. 21.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정정되었는데, 위 정정 전 피고의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하고, 위 정정 후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며,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정정 전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2.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제1항 발명은 그 구성 중 수평면과 오목부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정 전 제1항 발명과 구성이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7. 9. 28. 2007당288호로,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수평면과 오목부의 기술적 의미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

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정 전 제1항 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07. 11. 6.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2. 18. 2007허11692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정 전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3. 9. 환송 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29.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1. 7. 21. 2010정70호로 피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심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5) 대법원은 2011. 9. 8. 2009후1125호로, 위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정정 전 제1항 발명은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정 전 제1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환송 전 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는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 7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2. 이 사건의 쟁점

###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가 이 사건 심결 후 정정되었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도 그에 대응하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물 자체가 변경되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

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특허심판원이 그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중 수평면, 오목부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 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후2471 판결,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구성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①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 ②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 ③ 드럼에 축 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 ④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 ⑤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 ⑥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한 스테이터, ⑦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영구자석이 안착되는 축 벽면과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를 지지하는 후 벽면으로 이루어진 로터, ⑧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 후단부가 노출되도록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 ⑨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서 터브 후벽부 및 스테이터에 부착 고정되고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며 수평면에 대하여 터브 후벽부측으로 돌출되어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를 포함하되, ⑩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에 관한 것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 따르면, ㉠ 캐비닛(10)의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20), ㉡ 터브(20)의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30), ㉢ 드럼(30)에 축 연결되어 모터(50)의 구동력을 드럼(30)에 전달하는 샤프트(40), ㉣ 샤프트(40)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60a, 60b), ㉤ 베어링(60a, 60b)을 지지하도록 전단과 후단 양단에 베어링(60a, 60b)을 수용하는 금속 재질의 베어링하우징(70), ㉥ 권선이 감겨진 스테이터(140), ㉦

스테이터(140)의 외측에 형성되고, 영구자석(130c)이 내측에 장착되는 벽면부와 샤프트(40)를 지지하는 저면부로 이루어지는 로터(130), ◎ 터브(20)에 베어링하우징(70)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200), ⊗ 체결부재(150d)에 의해 터브 후벽부(200)에 결합되는 금속재질의 서포터(17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스테이터(140)는 체결부재(150a)에 의해 터브 후벽부(200)와는 직접 결합되지 않으면서 서포터(170)와 결합되고, 서포터(170)의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터브 후벽부(200)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H1~H4)이 형성되며, 터브 후벽부(200) 측으로 돌출되는 제1돌출부(P1) 및 스테이터(140) 측으로 돌출되는 제2돌출부(P2)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3) 양 발명의 구성 대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그 설명서에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양 구성은 터브, 드럼, 샤프트, 베어링, 베어링하우징, 스테이터, 로터, 터브에 베어링하우징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 서포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의 형상과 결합관계가 나타나 있어 각 대응구성들의 동일 여부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가 노출되도록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이하 '제1특징부'라 한다)와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된다는 구성'(이하 '제2특징부'라 한다)과 대비될 만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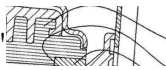
다. 확인대상발명에 제1, 2특징부에 대비될 만한 구성이 있는지 여부

#### 1) 제1특징부 대비 구성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가 터브 후벽

부로부터 노출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어 위 설명서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특징부와 대비할 수 있는 구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지만, 설명서 기재만으로는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지 않는 이상 그 도면 부분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2, 5~7에 의하면



70'와 같이 베어링하우징(70)의 후단부가 터브 후벽부로부터 노출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특징부와 대비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제2특징부 대비 구성 존재 여부

마찬가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된다거나 '이격'된다는 기재가 없어, 그 설명서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2특징부와 대비할 수 있는 구성이 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도 2에 의하면 서포터의 후단부와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가 와 같이 도시되어 있어 서포터의 후단부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된 것처럼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도면 중 도 5~7에 의하면 위 해당 부분이 와 같이 이격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위 도면들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에서

서포터의 후단부와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가 밀착된 것인지 이격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다른 도면들에 의하더라도 제2특징부에 대비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서포터의 후단부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의 밀착 여부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서포터와 베어링하우징의 각 후단부가 밀착된 구성과 이격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제1특징부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서포터 후단부와 노출된 베어링하우징 후단부의 결합관계를 '밀착'되었다고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각 후단부의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명확히 확정하여야 하며 확인대상발명에서 서포터와 베어링하우징의 각 후단부가 밀착된 구성과 이격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확정하려면 확인대상발명에 위 각 후단부가 밀착된다는 구성과 이격된다는 구성이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위 각 후단부가 밀착된 것인지, 이격된 것인지 또는 위 각 후단부의 밀착과 이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와 도면에 의하여 서포터의 후단부와 베어링하우징 후단부가 밀착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특허심판원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 것으로서 결론적으로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영화 \_\_\_\_\_

                 판사      이종우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_\_\_\_\_

                 판사      김승곤 \_\_\_\_\_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

### 1. 특허청구범위(2011. 7. 21. 정정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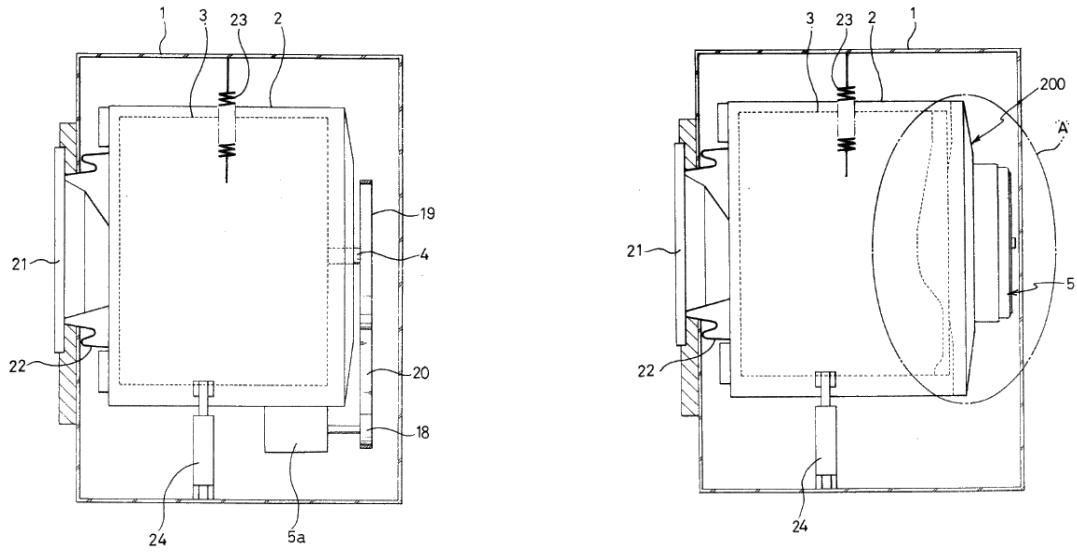
**청구항 1.** 캐비닛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와 상기 터브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과 상기 드럼에 축 연결되어 모터의 구동력을 드럼에 전달하는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과 상기 베어링을 지지하기 위하여 중앙부가 원통형으로 형성된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과 상기 드럼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스테이터와 상기 스테이터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형성되며 영구자석이 안착되는 측 벽면과 상기 드럼과 연결된 샤프트를 지지하는 후 벽면으로 이루어진 로터를 갖는 세탁기에 있어서, 상기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에 상기 금속재질의 베어링하우징이 그 후단부가 노출되도록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와 상기 터브 후벽부와 스테이터 사이에서 터브 후벽부 및 스테이터에 부착 고정되며, 그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상기 후벽부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을 가지며, 상기 수평면에 대하여 상기 터브 후벽부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스테이터 측에는 적어도 하나의 오목부가 형성된 서포터를 포함하되, 서포터의 후단부가 상기 노출된 베어링하우징의 후단부에 밀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의 구동부 지지구조.

**청구항 2. 3.** (각 기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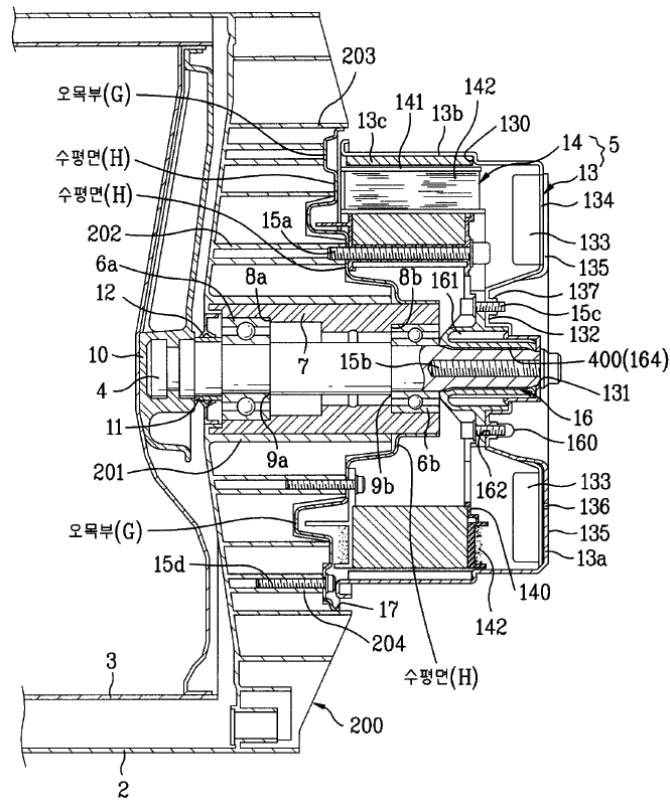
### 2. 주요 도면

도면 1(종래기술)

도면 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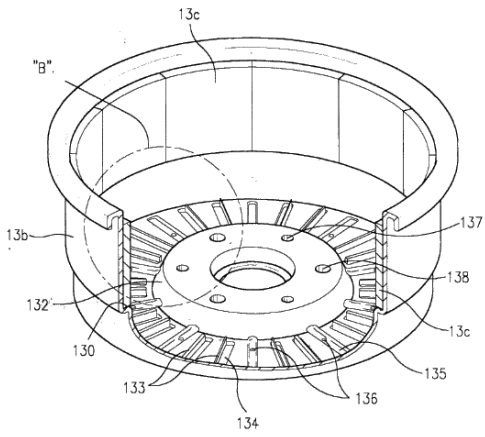


도면 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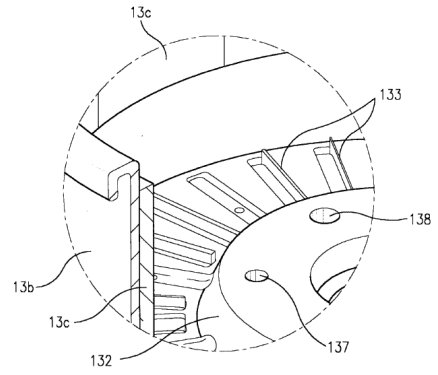


도면 3(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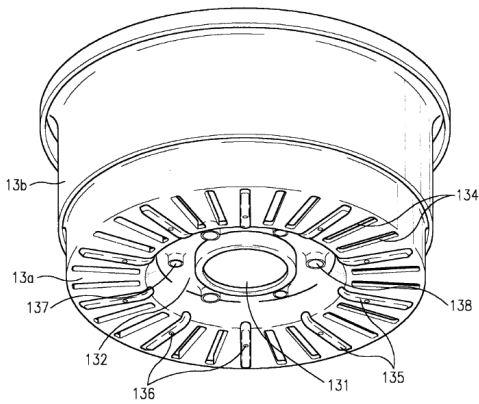
도면 4(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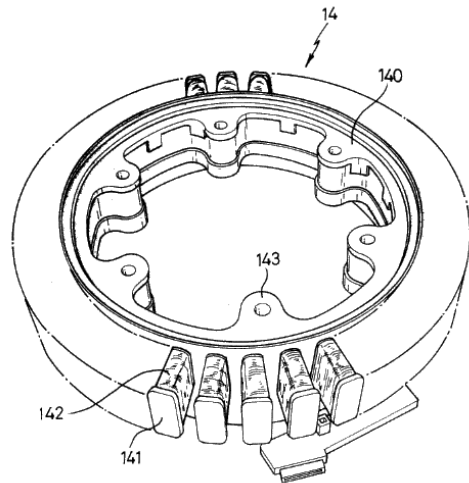
도면 5(로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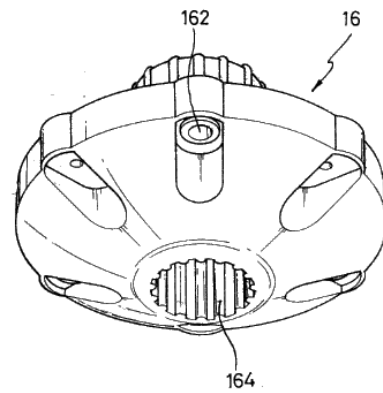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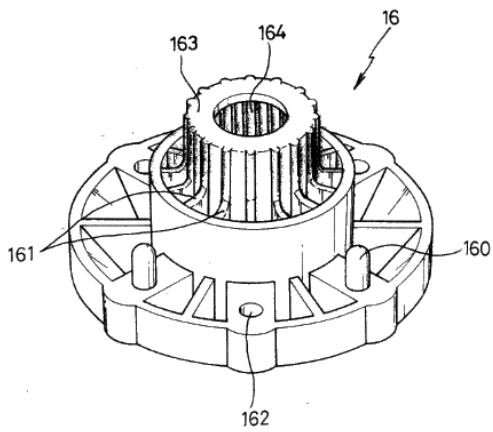
도면 6(스테이터)



도면 7(커넥터)



도면 8(커넥터)



[별지 2]

## 확인대상발명

###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

###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드럼세탁기의 단면도이다.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드럼세탁기의 구동부의 단면도이다.

도 3은 도 2의 A부의 확대도이다.

도 4는 도 2의 B부의 확대도이다.

도 5는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드럼세탁기의 구동부를 도시한 것으로, 참고도에 표시된 절단면 E1-E1'의 단면도이다.

도 6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드럼세탁기의 구동부를 도시한 것으로, 참고도에 표시된 절단면 E2-E2'의 단면도이다.

도 7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드럼세탁기의 구동부를 도시한 것으로, 참고도에 표시된 절단면 E3-E3'의 단면도이다.

참고도는 도 5 내지 도 7에 대한 절단면을 도시한 설명도이다.

### 3. 확인대상발명의 내용

확인대상발명은 드럼세탁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모터의 구동력이 드럼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구조를 개선한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에 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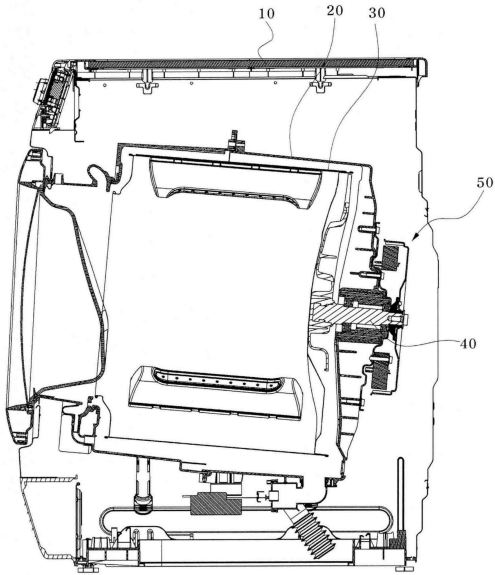
확인대상발명은 구동부를 간소화하여 비용의 저렴화, 소음과 진동의 저감화 및 제품 조립의 용이화를 통해 관리성 및 제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캐비닛(10)의 내측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터브(20)와 터브(20)의 내측에 설치되는 드럼(30)과 드럼(30)에 축 연결되어 모터(50)의 구동력을 드럼(30)에 전달하는 샤프트(40)와 샤프트(40)를 지지하기 위한 베어링(60a, 60b)과 베어링(60a, 60b)을 지지하도록 전단과 후단 양단에 베어링(60a, 60b)을 수용하는 금속 재질의 베어링하우징(70)과 권선이 감겨진 스테이터(140)와 스테이터(140)의 외측에 형성되고, 영구자석(130c)이 내측에 장착되는 벽면부와 샤프트(40)를 지지하는 저면부로 이루어지는 로터(130)와 터브(20)에 베어링하우징(70)이 인서트 사출된 터브 후벽부(200)와 체결부재(150d)에 의해 터브 후벽부(200)에 결합되는 금속재질의 서포터(17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스테이터(140)는 체결부재(150a)에 의해 터브 후벽부(200)와는 직접 결합되지 않으면서 서포터(170)와 결합되고, 서포터(170)의 중앙부와 외주면 사이에는 터브 후벽부(200)에 대향되는 복수의 수평면(H1~H4)이 형성되며, 터브 후벽부(200) 측으로 돌출되는 제1돌출부(P1) 및 스테이터(140) 측으로 돌출되는 제2돌출부(P2)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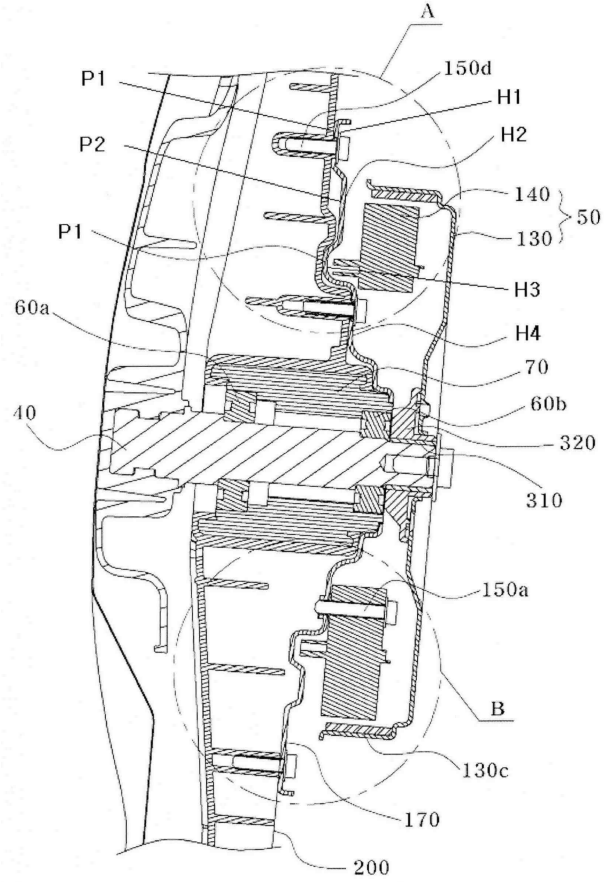
상술한 구성에 의해, 확인대상발명은 구동부를 간소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비용의 저렴화, 소음과 진동의 저감화 및 제품 조립의 용이화를 이룰 수 있어 관리성 및 제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서포터를 요철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에 의해 서포터 자체의 강도를 보강할 수 있음과 동시에 스테이터와의 에어 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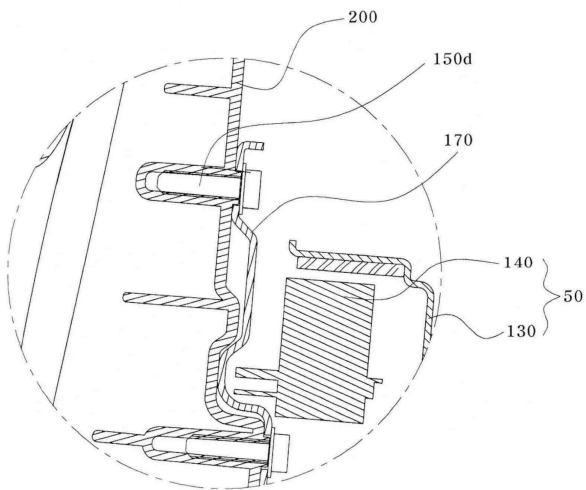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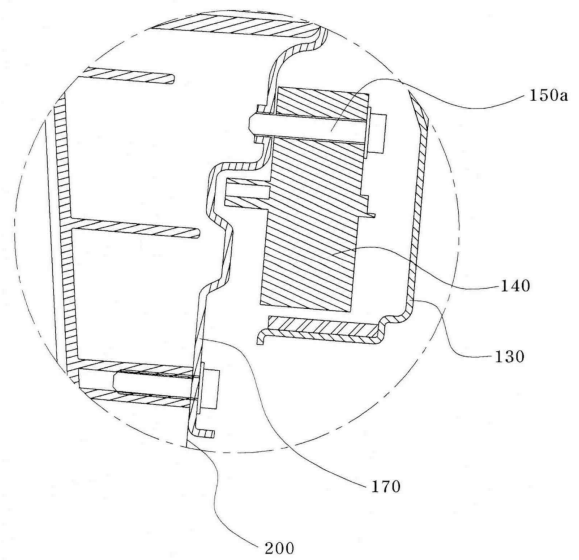
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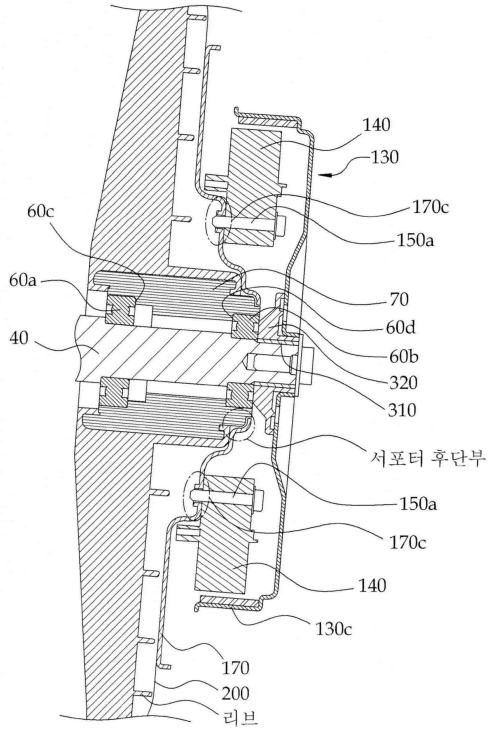
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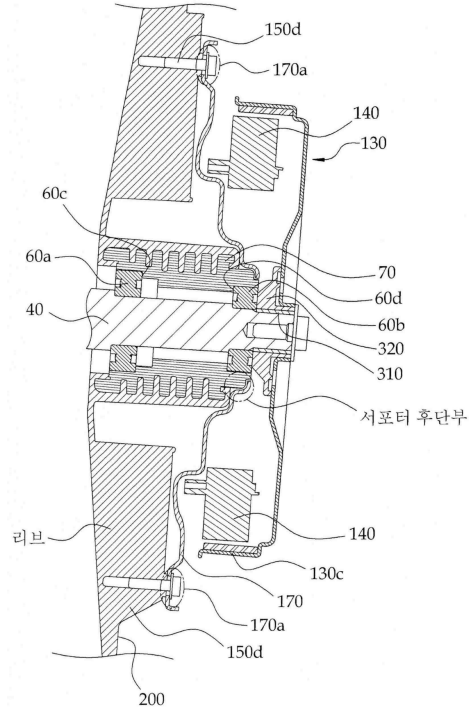
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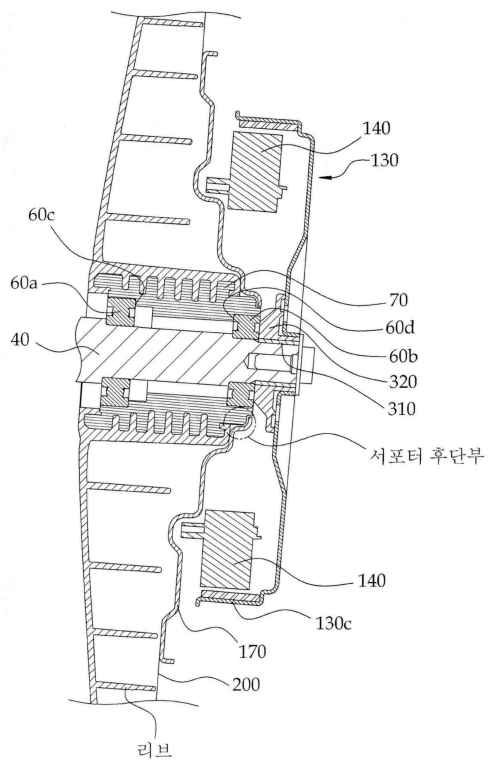
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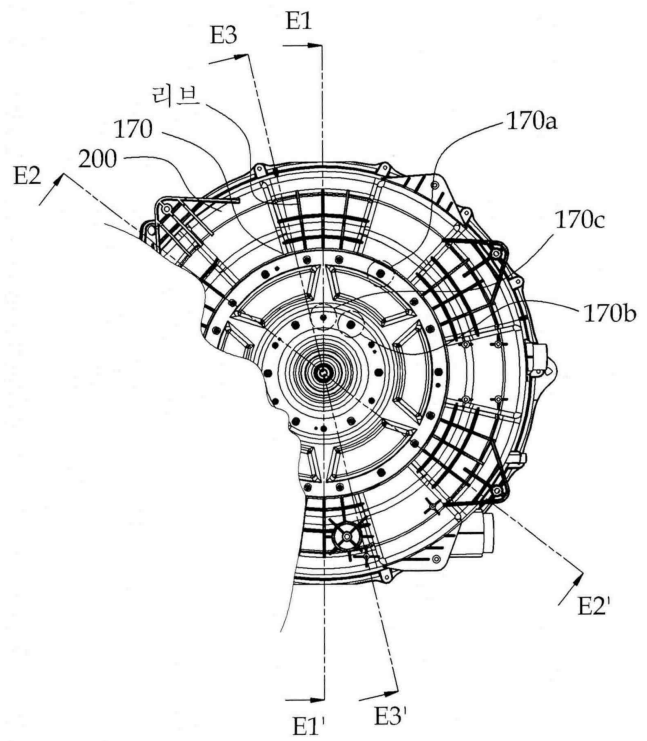
도 6



도 7



참고도



<끝>